

공장설립지원센터

복잡하고 어려운 개별입지의 공장설립
인·허가를 지원하여 공장설립 수요자에게
행정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법적 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공장설립에 관련한 입지선정의 상담 및 지원사업 안내,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의 운영,
각종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처리 등을 수행

공장설립 사업범위

- 입지, 환경 전문 컨설팅 지원
- 투자 규제, 기업애로 발굴을 통한 규제 개선
- 공장설립 네트워크 운영
- 공장설립 지원사업 안내
- 공장설립 지자체·관리기관 교육 지원

컨설팅 신청 방법

- ① 팩토리온 접속
(www.factoryon.go.kr)
- ② 원클릭 공장설립 클릭
- ③ 전문 컨설팅 신청

공장설립지원센터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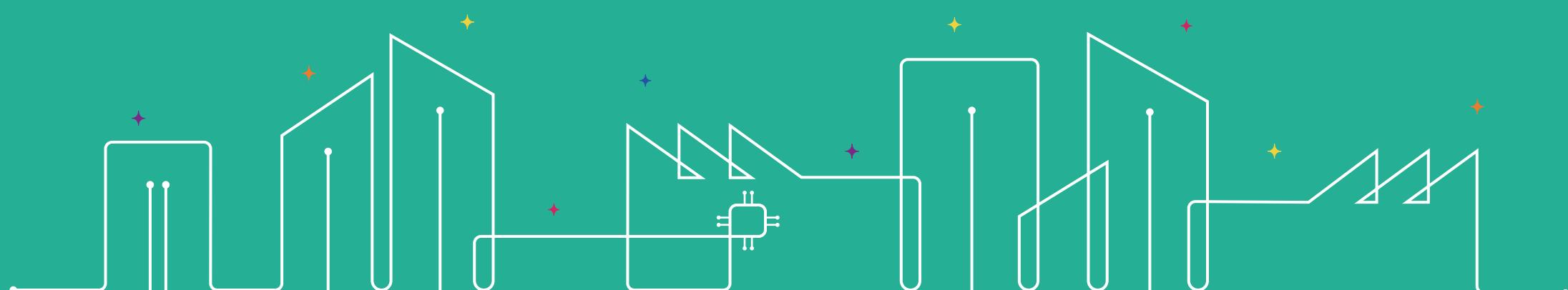
담당 분야	연락처 (070-8895~)
플랫폼 기획·운영	7266, 7381, 7213
입지·창업(전국)	7535
환경(수도권, 강원, 충청, 전북)	7537
환경(경상, 전남, 제주)	7829



원 클릭 공장설립 플랫폼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지원센터



원클릭 공장설립 플랫폼이란?

입지선정, 자금알선, 세금 및 지원 사업 연계 등
공장설립 토탈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공장설립 컨설팅 지원 분야

입지 컨설팅

입지 알선

건축 가능 여부 검토

공장설립 관련 법률 검토

인·허가 여부 검토

토목 측량, 각종 설계도서 작성

환경 컨설팅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업체 여부 검토

공장설립 관련 법률 검토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환경오염물질 배출신고서 작성

사후 관리(지자체 제출 후 보완사항)

지원대상 및 요건

① 투자규모 20억 이상

토지매입, 건축비, 기계장치
구입비용의 합

②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기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산업

③ 지방투자기업(국내복귀포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기업이
지방 이전 및 신·증설 투자하는 경우
(해외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투자하는 경우도 포함)



④ 탄소중립전환기업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⑤ 소부장 특화기업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제조기업

공장설립 지원절차

① 타겟기업 설정



공장설립 지원기업

투자 규모

투자규모 20억 이상

OR

지원 대상

- ①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기업
- ② 지방투자기업
- ③ 탄소중립전환기업
- ④ 소부장 특화기업

② 지원분야



원클릭 공장설립 플랫폼

전문 컨설팅

입지(창업, 측량)
환경(사전환경성, 배출신고)

공장설립 네트워크

공단·타기관 사업 연계지원

규제개선

투자규제, 기업애로 발굴 등

③ 공장설립



공장설립 지원기업

공장설립승인 신청서류작성

인·허가 심의 및 승인

공장건축준비

건축허가

공장건축 및 공장설립 완료신고

공장등록

④ 공장설립 인·허가



관계 기관(시,군,구 등)